#### 2 (제271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이명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건 호 2395

발의연월일: 2025.2.28.

발 의 자: 이명녀, 박경흠, 김태욱

문희성, 김도운, 정재환

강혜순, 문기호, 안영호

#### 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・심리적・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의 안전한 출산·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권익을 보호.

#### 2. 주요 제정내용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 사업(안 제4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비밀 누설의 금지(안 제7조)
- 사무의 위탁(안 제8조)
-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- **4. 관련법규:** 「모자보건법」제3조

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이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제3조

#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2. 14. ~ 2. 20.(6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.

#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위기임산부"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 중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 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 른 여성을 말한다.
  - 2. "보호출산"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- 제4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·출산·양육과정을 돕고 안 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임신・출산・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
  - 2.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
  - 3. 출산육아용품 지급 등 양육 지원 사업
  - 4. 보호출산 지원 사업
  - 5.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- 4 (제271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- 제7조(비밀 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근거법규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 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□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
-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6 (제271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2. 미첨부 사유

○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함.

## 3. 작성자

○ 소 속: 가족복지과

○ 직 급: 지방사회복지주사

○ 이 름: 곽태현

○ 연락처: 290-4911